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1.

성평등가족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11월 11일, 조은희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4년 11월 1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 제422회국회(임시회)

-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 2. 1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 제429회국회(정기회)

-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 (2025. 9. 22.)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 제4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 9. 24.)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국회의원 조은희)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득·재산 정도, 취업

상태 등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청소년부모를 선정하여 그에 대해 생활·의료·주거 등 복지지원을 할 수 있음. 이에 더해 현행 법령에 따른 복지지원 이외에도 여성가족부는 2022년부터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을 예산 사업으로 실시해오고 있음.

또한 현재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하는 경우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정폭력 및 친족성폭력 피해자와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원인이 되어 입소한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도록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쉼터 입소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폭력 등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가 원인이 되어 쉼터에 입소하는 경우를 연락의무 면제 사항으로 규정하고, 여성가족부가 예산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부모 대상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의 실시 근거를 현행법에 명확히 담아 그에 따른 금융정보 등의 조회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청소년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이 원활하고 지속적·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및 제18조의4, 제32조의2제1항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이 옥 순)

가. 청소년부모 복지지원 항목에 아동양육비지원 추가 등

개정안은 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항목에 아동양육비지원을 추가하고 금전적 방식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며, 복지지원 신청자의 금융정보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및 금융기관 정보제공 요청 절차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2항·제3항 및 제18조의4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3(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은 생활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후단 신설>	제18조의3(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아동양육비지원, 생활지원----------금전, 물품----------. ③ ----------. 이 경우 복지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또는 내용은 소득·재산 정도, 취업상태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리하여 정할 수 있다. 제18조의4(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이하 “복지지원”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복지지원을 신청한 청소년부모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복지지원 대상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정보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현 행	개 정 안
	(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낸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보험정보”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부모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복지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부모가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복지지원 대상 선정기준에 적합한 상태가 유지되고

현 행	개 정 안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청소년부모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⑥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의 방법·절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4(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생 략)	제18조의5(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현행 제18조의4와 같음)
제18조의5(청소년부모에 대한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생 략)	제18조의6(청소년부모에 대한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현행 제18조의5와 같음)

청소년부모[1]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의 청소년인 경우로 현행법은 청소년부모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복지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청소년부모”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말한다.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 청소년부모 지원 규정 현황 >

제18조의2(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2.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방문건강관리사업 서비스
3.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 서비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3(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에게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은 생활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4(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부모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및 교육비 지원 또는 검정고시 지원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3.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교육 지원
4.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의 학업과 양육의 병행을 위하여 그 자녀가 청소년부모가 속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부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5(청소년부모에 대한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직업소개 및 관리
4.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런데 청소년부모는 학업과 생계를 병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아동양육비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2022년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지원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2022년 7월부터 2025년 현재까지 계속사업으로 지원 중이나, 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 최근 3년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실적 >

구분	소득기준(중위)	월 지원금	예산액	실적(연인원)
2022년	60% 이하	20만원	1,800만원	1,291명
2023년	60% 이하	20만원	3,600만원	1,569명
2024. 10월	63% 이하	23만원	2,250만원	1,468명

자료: 여성가족부

이에 개정안은 ① 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항목에 아동양육비지원을 추가하고, 물품과 서비스 외에 금전의 형태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② 청소년부모가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복지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금액 등의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③ 복지지원 신청자의 금융정보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및 금융기관 정보제공 요청 절차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법은 청소년 부모의 복지지원은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만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금전 지급 근거 등 아동양육비지원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또한 현행법은 복지지원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행법 시행령 제10조의2제3항[2]은 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청소년부모가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복지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금액 등의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현재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중복금지 사항에 관한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급여(아동양육비 제외)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건강가정기본법」및 「긴급복지지원법」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동일한 내용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해당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2)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의2(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및 복지지원)** ③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및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아이돌봄 지원법」,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 지원대상자에 대한 중복지원 금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유사 입법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복지 급여의 내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에 따른 복지 급여의 신청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삭제 <2011. 4. 12.> 4. 아동양육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는 지급할 수 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의2(위기가족긴급지원)** ⑤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이 법의 지원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기본원칙)** ② 「재해구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청소년부모가 자녀양육비지원 등 복지지원을 신청한 경우 선정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판정하기 위하여는 신청자의 소득, 재산 등의 금융정보 및 신용정보의 확인 절차가 필요한바, '금융정보 등 제공' 근거를 규정하는 것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 청소년부모에 대한 자녀양육비지원 등 복지지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3]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에 해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급여"란 제5호의 보장기관이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당되는데, 대부분의 사회보장급여 사업은 개별법[4]에 '금융정보 등 제공' 조항을 두고 있음.

다만, 체계자구 수정과 관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일부 인용조항은 그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개정안		수정의견
해당 조항	해당 내용	
제18조의4 제2항 및 제3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5] --
제18조의4 제5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 및 제35조제2항[6] --

---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8조(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 「암관리법」 제13조의(금융정보등의 제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다수 개별법에 동 규정 명시

5) 개정안 제18조의4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이라 함)과 관련 제32조제1항을 인용하고 있는데, 「신용정보법」 제32조제1항은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동의받아야 하는 사항을, 같은 조 제2항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때 동의받아야 하는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주체인 여성가족부장관이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청소년부모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신용정보법」 제32조제2항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아이돌봄지원법」,「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경우 「신용정보법」 제32조제2항을 인용하고 있음(참고자료 1 참조).

6) 개정안 제18조의4제5항에서는 「신용정보법」과 관련 제35조를 인용하고 있는데,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는 내용은 제35조제2항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2조제7항에서도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는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는바, 금융기관등의 장이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사실을 명의인이 동의한 경우 금융정보등 제공사실을 통지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개정안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신용정보법」 제32조제7항 및 제35조제2항을 인용하는 것이 보다 명확할 것으로 보임.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한부모가족지원법」,「아이돌봄지원법」은 제32조제7항을, 「공공주택 특별법」,「주택도시기금법」,「희귀질환관리법」은 제35

한편, 개정안은 청소년부모의 아동양육비지원 절차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조[7]에 따라 관련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대할 수 있으며,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복지지원을 신청한 청소년부모의 금융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청소년부모가 동일한 내용을 지원받는 경우 지원금액 등의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시행령으로 이미 중복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상위법에 여지를 두는 방식으로 법령 체계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사실상 동일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중복사업은 예산사업으로 편성될 수 없으므로 개정의 실익이 적다는 입장임.

조를, 「국민건강보험법」은 제32조제7항, 제35조제2항을 인용하고 있음(참고자료 1 참조).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와 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나. 가정복귀가 어려운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 입소 시 보호자 연락 의무 면제

개정안은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 입소 시 보호자에게 연락하도록 하되, 가정폭력 및 친족에 의한 성폭력 등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 청소년쉼터에 입소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연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제1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의2(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 <신 설>	제32조의2(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 ① 청소년쉼터(가정 밖 청소년을 7일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청소년쉼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청소년쉼터에 가정 밖 청소년이 입소하는 경우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가정폭력 및 친족에 의한 성폭력,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원인이 되어 입소하는 경우에는 연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청소년쉼터(가정 밖 청소년을 7일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청소년쉼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청소년쉼터	② 청소년쉼터를----------

현 행	개 정 안
에 입소한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원인이 되어 입소한 경우에는 그 가정 밖 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가정 밖 청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1.·2. (현행과 같음)
②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을 퇴소시키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청소년복지시설에의 입소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

현행법[8]에 따르면, 가정 밖 청소년은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

8)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가정 밖 청소년"이란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이하 "청소년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쉼터: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청소년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복지시설임.

한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9] 제2조에 따르면 실종 당시 가출한 18세 미만인 아동은 실종아동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6조는 보호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등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경찰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18세 미만의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를 입소하려는 경우 청소년쉼터의 장 및 종사자는 보호자와의 연락 가능 여부 등을 확인

---

9)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略取)·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아동등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한다.
4.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6조(신고의무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등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경찰청장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신고체계(이하 "경찰신고체계"라 한다)로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1.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

제19조(과태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후 그 결과에 따라 경찰에 신고하여야 함. 「실종아동법 시행령」 제8조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10]는 경찰청장 등은 실종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가정폭력행위자 등이거나 실종아동이 보호자의 학대 등을 이유로 복귀를 거부하는 경우 등에는 실종아동의 복귀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입소 관련 여성가족부 지침('청소년 사업안내')은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 입소 시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청소년이 원하지 않을 경우 시설의 정확한 위치는 알리지 않음), 가정폭력 및 학대 등의 사유로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

10)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실종아동등의 복귀)** 경찰청장·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자를 확인한 경우에는 신속히 실종아동등의 복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자이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복귀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학대행위자
3.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학대행위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실종아동등의 복귀절차 등) ①영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경찰청장·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실종아동등을 보호자에게 복귀시키는 경우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보호자로부터 실종아동등의 인수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영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복귀가 아동등의 보호·양육을 위하여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종아동등이 보호자의 학대 등을 이유로 복귀를 거부하는 경우
2. 보호자가 실종아동등을 학대하였거나 학대를 한 것으로 볼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삭제 <2013. 11. 20.>
4. 보호자가 마약류·알콜중독, 전염성 질환 그 밖에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보호자가 실종 이전에 아동등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 및 치료 의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외 가정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사유(보호자 부재 등)로 입소하거나 보호자의 수신거부·연락두절 등으로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서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쉼터별로 두고 있는 청소년쉼터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사례별 판정기준을 마련하여 예외 사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구체적 운영기준에 있어 청소년쉼터별로 일관성이 부족할 여지가 있음.

그런데,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실태조사-부록: 기초통계결과표」[11]에 따르면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12]을 이용한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출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가족과의 갈등'이 70.6%, '가족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라는 답변이 49.4%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가족갈등 및 폭력을 피하기 위해서 가출을 한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 본인의 위치가 보호자 등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청소년쉼터 관계자에 따르면 쉼터 입소 문의 시 청소년들은 자신의 입소 사실이 부모에게 통보되는지를 알고 싶어하며, 부모에게 통보될 경우 청소년들이 입소하지 않겠다고 답하거나, 입소한다고 약속해놓고

---

11) 조사기간 : 2021년 8월 27일 ~ 2021년 11월 30일(참고자료 2 참조)

1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이하 "청소년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청소년자립지원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

도 그대로 연락두절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등 일부 가정 밖 청소년이 보호자 연락 미동의를 사유로 자발 퇴소하거나 입소를 거부하고 있고 이런 청소년들은 노숙이나 거리를 배회하는 등 복지안전망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임[13].

이에 개정안은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 시 보호자에게 연락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쉼터에 입소한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연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으로 복귀하기가 어려운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청소년쉼터 입소 시 보호자 연락의무는 19세 미만의 가정 밖 청소년이 입소하는 경우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한편, 개정안은 보호자에 대한 연락의무 면제 사유를 현행법 제32조의2제1항(개정안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정 밖 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켜서는 아니되는 사유 〔① 가정폭력, ② 친족에 의한 성폭력, ③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시행령: 아동학대)〕 와 일치시키고 있는데,

13) 가정 밖 청소년이 쉼터에 입소하지 못하는 이유: 청소년쉼터 입소 절차 입법개선 시급,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분석, 허민숙, 2024.10.7

「민법」[14]상 친권에 따른 미성년자 양육권, 거소지정권 등과의 충돌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에도 대통령령에서 예외 사유를 필요최소한으로 규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봄.

개정안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현행 지침에 따라 미성년 청소년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친권 등을 고려하여 보호자에게 연락하도록 조치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미성년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에 대한 연락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입장임.

또한, 개정안에서는 청소년들이 청소년쉼터 입소를 기피하는 원인으로 지적되는 청소년의 의사에 반하여 보호자에게 입소 예정 청소년쉼터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의 제공 여부에 관한 규정이 없어, 청소년들이 청소년쉼터에서 마음 편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 의사에 반하는 정보제공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14) **「민법」 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제914조(거소지정권) 자는 친권자의 지정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소위원장 : 김한규)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함.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